#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21

발의연월일: 2022. 2. 23.

발 의 자:서일준·김용판·추경호

권명호 · 하영제 · 김승수

박완수 · 이종성 · 김미애

양금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련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임금 상승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기업들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행세액공제를 계속적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이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계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 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년 12월 31일-----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 금증가분의 100분의 5(중견기 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 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 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 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 (3)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u>2월 31일</u>-----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 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 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

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2. (생략)
- ④ (생략)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수 있다.
- 1. ~ 3. (생략)
- ⑥ ~ ⑧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5
2025년
<u>====</u>
19.9] 91.6]
12월 31일
<u>12월 31일</u>
<u>12월 31일</u>
12월 31일
<u>12월 31일</u>